

## 최고의 법사학자, 존 위티(John Witte, Jr.)를 만나다

# 세상 속, 부르심에 힘입어

번역 · 정리\_백은석 교수

기독교 법학(Christian Legal Studies)의 최고 석학인 미국 에모리대학의 존 위티(John Witte, Jr.) 교수가 한동국제법률대학원의 초청으로 방한하여 한동대학교 개교 20주년 기념 행사와 기독교법률가회 및 한국법사학회 등에서 강연하였다. 위티 교수는 하버드 로스쿨 은사인 해롤드 버만(Harold Berman)<sup>1)</sup> 교수와 함께 주류 법학계의 관심 밖에 있던 “법과 종교”(Law and Religion)를 법학 연구의 주요 분야로 정착시키는데 핵심적 역할을 했으며, 특히 프로테스탄티즘이 근대 법·정치사상의 형성에 끼친 근원적 영향을 연구한 기념비적 저술<sup>2)</sup>을 다수 남겼다. 에모리대학 최고 영예인 우드러프 교수직과 맥도날드 석학 교수직을 겸임하면서 같은 대학 법과종교연구소(Center for the Study of Law and Religion)를 이끌고 있는 위티 교수를 한동국제법률대학원 교수들이 만나 대담했다.

**한동국제법률대학원(이하 HILS):**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요 탁월한 법학자이신 교수님을 모시게 되어 기쁩니다. 우선, <월드뷰> 독자들을 위해 교수님의 신앙적 배경, 교육과 학문여정에 관한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존 위티 교수(이하 Witte):** 부모님은 1950년대 초 네덜란드에서 캐나다로 이주하신 화란개척교회(Dutch Reformed Church) 분들이셨지요. 어려서부터 가정과 교회에서 문답식 교리교육을 받았고, 개혁교단소속 초·중등학교를 다니면서 기독교는 삶의 근본이며 기독교 세계관이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쳐야 한다는 사상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제가 성장한 배경인 개혁신앙은

카이퍼주의(Kuyperianism)라고 불리는데, 영역주권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삶의 모든 부분에 관한 그분의 뜻이라고 여기고 어떤 관점이든 그 이면에 작동하는 세계관을 분별해야 함을 강조하는 전통입니다. 이후 미시건 주 그랜드래피즈에 소재한 칼빈대학교에 진학하여 역사와 철학 등을 공부하며 문명형성에 기여한 기독교의 역할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학을 통해 관련 주제들에 접근해보는 것이 흥미로울 듯하여 예일대학교 법학/역사학 연계박사과정으로 진로를 정했지요. 역사학부의 스티븐 오즈맹 교수<sup>3)</sup>의 지도를 받을 계획이었는데, 그분이 하버드대학교로 옮기시면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곳은 법학과 역사학 연계과정이 개설되어

1) 저명한 법학자 해롤드 버만(1918-2007)은 하버드 대학교와 에모리 대학교에서 60여 년간 교수직을 역임했으며, 서양법의 연원을 종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연구하여 “법과 종교” 분야를 개척하였다. 주저로는 *Law and Revolution I: The Formation of the Western Legal Tradi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83; 『법과 혁명 1: 서양법 전통의 형성』 김철 역, 한국학술정보, 2013), *Law and Revolution II: The Impact of the Protestant Reformations on the Western Legal Tradi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2006; 『법과 혁명 2: 근대 프로테스탄트 개혁이 서양법 전통에 미친 영향』, 한국어판 출간예정), *Faith and Order: The Reconciliation of Law and Religion* (Wm. B. Eerdmans, 1993) 등이 있다.  
2) *The Reformation of Righ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권리와 자유의 역사』 정두메 역, IVP, 2015), *Law and Protestantism*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등이 대표적이다.  
3) 국내에 소개된 스티븐 오즈맹 교수의 저서 중에는 *Protestants: The Birth of a Revolution* (『프로테스탄티즘: 혁명의 태동』 박은구 역, 헤안, 2004)이 잘 알려져 있다.



있지 않았거든요. 고민하던 중, 하버드 로스쿨의 해롤드 버만 교수님께 편지를 드렸습니다. 학부 때 그분의 글을 많이 접했거든요. 버만 교수님은 장문의 회신을 보내 주시면서 당신의 연구조교로 일할 것을 제안하셨고, 이후 3년간 하버드 로스쿨을 다니면서 매주 48시간씩 그분과 같이 “법과 종교”와 관련된 연구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유태인으로서 많은 희생을 감수하시며 기독교로 개종하셨던 분인데, 법과 종교 및 서양문명의 상호작용에 관한 근본적 질문들과 씨름하며 “법과 종교” 분야를 개척하시던 거장의 발치에서 배울 수 있었던 것은 대단한 특권이었고 저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1985년 하버드 로스쿨 졸업과 동시에 버만 교수님을 당시 초창기 법과 종교 프로그램의 정착을 위해 에모리대학교로 옮긴 후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Hills:** “법과 종교”와의 인연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말씀 해주셨는데요, 교수님은 법사학자로서 혼인법과 가족법, 종교자유 및 인권 분야에도 탁월한 연구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어떤 계기로 두 분야가 교수님의 학문적 관심사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Witte:** 종교개혁은 서양사의 주요 이음매(seam) 중 하나로써 변혁의 시기(transformative moment)였습니다. 학부생 때부터 관심을 가졌고, 법학을 공부하면서 더욱 구체적으로 종교개혁이 법과 정치 및 사회에 끼친 지대한 영향에 대해 연구해 보고 싶었습니다. 16세기에는 혼인과 가족이 핵심 관심사 중 하나였는데, 혼인을 성례로 보아 가톨릭 교회법원의 관할권 하에 두고 복잡하게 규율하고 있던 종전의 접근에 대해 종교개혁자들이 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헨리8세와 교황청의 마찰, 마틴 루터의 교회법서적 소각사건, 칼빈의 혼인조례 개정 모두가 이 문제와 연계되어 있었음을 발견하고, 버만 교수님의 연구조교 시절과 이후 학자로서의 첫 연구 주제로 삼았습니다. 혼인과 가족은 삶의 근본적 주제이면서 국가와 교회가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영적 차원과 세속 차원의 교차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14~17세기 혼인과 가족제도의 변천사를 연구하면서, 주제의 성격상 해당 시기 이전의 고대사료와 성경자료뿐 아니라 해당 시기 이후 여러 변혁의 시기들에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계몽주의 시기와 현대성혁명(modern sexual revolution) 시기까지 관심의 영역이 확장되었던 것입니다. 연구를 하면 할수록 그것이 서구전통의 기반을 이루는 근본제도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금의 현실과 논의는 이러한 전통과 비교할 때 혼인의 존재론적, 목적론적 풍성함에 있어 빈약하기 그지없다고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지요.

종교의 자유와 인권 문제도 종교개혁에 관한 저의 관심에서 비롯된 세부주제라 하겠습니다. 제가 한동대학교 개교 20주년 기념 강연에서 다루었던 마틴 루터의 『그리스도인의 자유(De Libertate Christiana, 1520)』는 당시 스킨라신학과 가톨릭교회에 의해 자행된 양심과 개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침해를 지적하며 자유를 부르짖는 글이었습니다. 저의 종교개혁에 대한 관심은 종교의 자유뿐 아니라 서구의 권리담론 전반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로 이어졌으며, 종교개혁이 서양사의 주요 이음매를 형성하는 변혁적 시기였음을 재확인케 되었습니다. 또한, 혼인법 연구에서도 그랬듯이, 연구대상에 노예와 어린이, 고아와 과부의 권리에 관한 성경적

자유론의 발달과정도 포함하게 되었고, 개혁기 이전 로마(사)법과 중세 교회법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특히, 종교개혁자들이 어떻게 교부시대부터 중세를 거쳐 형성된 가톨릭 전통의 유산을 분명한 성경적 기준으로 평가하여 성경적 근거 위에 재구성함과 동시에 자신들만의 기여를 새롭게 하였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계몽주의 시대와 현대에 이르는 개혁기 이후의 인권논의 전개 과정에도 학문적 관심을 가지게 되었지요. 이 주제도 삶의 본질적 측면에 관한 것인데, 저의 학문적 관심은 신앙(faith), 자유(freedom), 가족(family)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고자 하는 것들이기도 하잖아요? 이 모두를 연구한다는 것은 참으로 큰 특권이라 하겠습니다.

**HHS: 교수님의 전공분야 중 혼인법/가족법에 관해 몇 가지 질문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비롯된 혼인관계의 법적 형태가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어떤 모습이라고 보시지요?**

*Witte:*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 기준의 희랍-로마전통과 유대교전통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등장했던 시기에는 이미 이성간 그리고 일부일처간의 연합을 유효한 혼인관계로 보고 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도록 하는 제도가 뿌리내려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교 전통에서는 일부다처제를 허용하면서도 이성간의 일부일처혼인에 특권을 부여하고 있었지요. 이러한 제도적 배경에 기독교는 기존의 전통에선 볼 수 없던 복음서와 바울서신서에 등장하는 특징적 요소를 추가하여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됩니다. 우선, 배우자간의 상호성을 강조했지요. 고린도전서 7장에 나오는 배우자 상호간의 성적 의무를 위시하여 서로의 희생을 요구하고 자녀와의 관계에서 남편과 아내 모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 등은 당시 가부장적 이해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둘째, 부부관계의 신의를 강조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에서 로마법과 유대법이 이혼을 쉽게 허용하는 것을 문제시 하시면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에 근거

하여 기독교전통은 음행/간통이나 처자유기 등의 극히 제한된 예외적 경우(고린도전서 7:15) 이외에는 결혼을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신비한 연합을 상징하는 영구적 연합으로 보았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기독교는 육체가 주님의 성전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자기 몸의 성적 표현에 본질적 제한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남성의) 방임적 성생활과 동성행위를 비롯한 여러 성적 표현들을 용납했던 당시 희랍-로마문화와는 크게 대조를 이루었지요. 셋째로 상호성과 신의의 중요성과 더불어 기독교가 혼인법/가족법에 기여한 바는, 상속권을 특정 자녀뿐 아니라 모든 자녀들과 생존 배우자에게 분산토록 했다는 점입니다. 기독교가 출생 순서로 권리를 결정하는 제도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했음을 여러 기록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혼인법/가족법과 관련해 기독교와 기존 전통과의 관계는 연속성과 불연속성 양면이 모두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HHS: 오늘날의 혼인법과 결혼에 관한 이해는 희랍-로마시대나 중세교회의 혼인관과 비교할 때 너무나 다릅니다. 이러한 변화의 이유가 무엇이고, 어느 정도까지 기독교의 영향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Witte:* 결혼과 가족에 관한 서양의 법과 도덕적 전통을 살펴보면 변혁의 이음매가 여러 군데 보입니다. 4세기와 5세기에는 로마제국과 로마법의 기독교화로 인해 혼인법/가족법이 극적인 변화를 거치게 됩니다. 12세기와 13세기는 버만 교수가 “교황 혁명(Papal Revolution)”이라 불렀던 변혁의 시기로, 가톨릭교회가 혼인제도의 관할권 등 더욱 깊숙이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진 종교개혁 시기에는 교회와 국가가 협력관계에서 결혼제도를 운영하도록 함과 동시에, 결혼무효화 등에 관한 제도적 걸림돌을 제거하고 결혼에 관한 한 보다 많은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18세기와 19세기 계몽주의 시대를 거치면서도 결혼의 중요성에 관한 본질적 이해는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몽주의는 교회와 종교적 유산을 근본적으로 부정했던 흐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인제도의 형태와 성격, 목적에 관하여는 파격적이라고 할 만큼 전통적 견

해를 유지하면서, 결혼을 공동체 내에서 사적 유익과 공적 유익 모두를 추구하는 근본적인 제도로 이해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혼인관과 가족관의 본질적 변화와 단절은 1960~1980년대를 거치며 일어나는데, 가히 성과 이혼의 혁명기(sexual and divorce revolution)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전통을 비롯해서 과거로부터 전수된 것을 과격하게 부정하고, 권위에 대한 존중을 거부하며, 개인의 선택을 숭상하고, 성적욕구충족을 앞세웠던 시기로 가부장주의 또는 온정주의에 근거한 여하의 속박에서 벗어나 개인의 몸을 성적으로 해방하고자 했지요. 유럽과 미국의 성적혁명(성적혁명)의 변화와 맥을 같이하는데, 미국에서는 연방대법원의 기본권 관련 결정들이 이러한 현상을 부추겼다고 하겠습니다. 1965년 Griswold v. Connecticut<sup>4)</sup>과 1973년 Roe v. Wade<sup>5)</sup>등이 성적 행위를 개인의 사적 선택의 영역에 두고 개인의 자율성(autonomy)과 프라이버시의 문제로만 규정함으로써 국가나 교회를 비롯한 공적 주체들이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혼의 급증으로 이어졌는데, 배우자의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가능케 한 무과실일방이혼(unilateral no-fault divorce)제도의 영향이 지대했었다고 봅니다. 이 법을 채택하는 주들이 늘다 급기야 1985년에는 미국 전역의 통일법이 됩니다. 또한, 부모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인종그룹에 따라서는 40~71%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마치 교육수준이 높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소수만을 위한 제도로 이해하게 된 듯합니다. 또 결혼의 지체도, 유익함도 깨닫지 못하고 오직 부담만 느끼는 것으로 특히 결혼을 하면 관계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 자신의 결정권을 누군가에게 넘기는 것이라고 치부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50여 년간의 성적 자유가 초래한 심각한 사회·심리적 병폐들을 인식하면서 최근에는 결혼을 장려하려는 노력들이 주정부 차원에서 보이지만 그간의 큰 흐름을 바꾸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HLS:** 교수님의 저서 중 서양혼인제도의 변천사를 개관한 『From Sacrament to Contract』가 국내에도 번역·소개되어 있습니다.<sup>6)</sup> 이 책에서는 가톨릭교회와 개신교 여러 교파의 다양한 신학적 결혼관이 계몽주의와 함께 어떻게 서양혼인가족법의 사상적 근간을 형성하게 되었는지 서술하면서, 혼인제도를 영적, 사회적, 계약적 그리고 자연적 측면을 모두 가진 다차원적 복합체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앞서 안타까운 결혼의 현주소를 미국의 예를 들어 잠깐 언급하셨는데, 교수님께서서는 오늘날 결혼관의 가장 본질적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Witte:** 서양혼인법의 역사를 보면, 고대 희랍-로마전통과 유대교전통을 이어받은 기독교가 중세와 종교개혁기를 거쳐 계몽주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결혼의 존재론적·목적론적 깊이를 더하여 매우 풍성하고 두터운 개념으로 발전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혼인법은 이러한 다차원적 결혼관 대신 당사자간의 사적 계약으로 보는 관점을 채택함으로써 결혼제도의 일면만을 지나치게 부각시킨다는 점을 우선 지적하고 싶습니다.

4) Griswold v. Connecticut 사건: 부부의 피임약 사용을 규제하던 코네티컷 주의 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으로서, 이를 근거로 수년 후에는 부부사이 뿐 아니라 혼외성관계자와 미성년자의 피임약 사용권리도 헌법적 보호를 받게 되었다.  
 5) Roe v. Wade 사건: 임신한 여성이 낙태를 선택할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하면서, 여성의 선택권을 인간/생명으로서의 태어를 보호할 권익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보아 낙태 규제를 기본적으로 위헌이라 결정하였다.  
 6) From Sacrament to Contract: Marriage, Religion, and Law in the Western Tradition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7, Second ed. 2012); 『성례에서 계약으로: 서양혼인법의 역사와 신학』, 정경화·유금주 역 (대한기독교서회, 2006)



결혼을 성례로 보았던 중세 가톨릭교회는 결혼제도의 종교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혼인제도와 관련된 교회의 권한도 확장하였습니다. 이어진 종교개혁 시기에 개혁자들은 가톨릭교회가 국가의 관할권까지 침탈한 것과 금욕적 독신주의를 결혼생활보다 우월한 가치로 강조한 것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게 되지요. 마틴 루터는 가족과 교회 및 국가를 각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기본적인 자연 질서의 한 부분이며 유기적 사회체제로 보고 이들 3자간의 관계 위에 사회구조를 세워가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남녀간 결혼의 자유를 확대하는 기반을 놓았고, 성직자도 가정을 이루어 평신도들의 모본이 될 것을 권했던 겁니다. 루터파 전통이 결혼의 사회적 측면을 강조했다면, 칼빈과 개혁파 전통은 남편과 아내의 혼인관계를 본질적으로 야훼 하나님과 그 백성간의 언약 관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언약 관계의 모형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칼빈주의 결혼관은 언약적 신의를 강조하였는데, 로마법의 영향으로 남성의 외도를 허용하던 혼인법 개정의 기폭제가 되었고, 지속적 언약불이행을 이유로 예외적이지만 이혼을 허용하는 법리의 등장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 성공회파는 결혼의 공공성과 사회·경제적 차원을 중시하였는데, 결혼을 통해 만들어지는 가정을 교회와 국가를 구

성하는 일종의 작은 정치공동체로 이해하였으며 건강한 혼인과 가정은 곧 교회와 국가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결혼과 가족의 영적 차원과 성경적 근거를 공통적으로 중시했던 기독교전통의 네 가지 결혼관(models of marriage)의 영향으로 결혼에 대한 이해는 더욱 깊어졌고 서양혼인법도 이를 반영하게 되었지요. 계몽주의 시대에 이르르면 결혼을 당사자 간의 사적 관계로 보는 계약 모델이 등장하는데, 결혼의 종교적 차원은 부정되고 혼인제도의 사회·경제적 중요성도 부차적인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HILLS:** 오늘날 결혼과 가정의 문제는 그릇된 결혼관의 문제이며, 이러한 결혼관은 계몽주의의 산물인 계약 모델 위에서 있다는 지적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Witte:** 그렇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결혼에는 계약적 측면도 있으니깐요. 오히려, 오늘날은 계몽주의 시대에도 강조되었던 결혼의 자연적 측면마저 거부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지적했지만, 계몽주의와 관련해서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계몽주의는 종교와 전통을 거부하고 자아를 옥죄는 과거로부터의 해방을 외치며 자유와 권리를 강조했던 사조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관련 기록들을 살펴보면 놀랍게도 거의 예외 없이 결혼을 근본이 되는 제도이며 건강한 정치사회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게 여겼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혼관계의 자연적 차원 또한 강조하고 있는데, 결혼은 이성간 그리고 일부일처간 평생 지속되는 관계이어야 하고, 간통이나 매춘 혹은 축첩과 일부다처제 및 혼전성관계와 근친상간은 이성과 경험 및 실용주의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무엇보다도 자연의 질서가 그렇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사실, 영장동물학과 진화인류학 등 여러 진화이론들이 무엇이 “자연적”인가에 관해 공통적으로 말하는 바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소위 인간종의 심층구조(deep structure)는 번식을 위한 배타적 짝짓기를 지지하며, 성경의 창조질서인 두 육체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지난 세기 진화과학이 발견한 후세 생산의 가장 적합(fittest)하고 유용한 최고의 방편과 다르지 않다는 거지요. 그런데, 1960년대 이후 이러한 자연적

질서를 거스르면서 무수한 혼외 출산아와 홀부모 아이들로 인한 비용이 국가의 몫으로 떠넘겨 졌습니다. 결혼으로 시작되는 친족구조가, 다음 세대의 좋은 삶을 준비했던 과거의 기반이 허물어져 가는 모습과 약속을 지킬 능력조차 없는 국가를 보고 있는 것이지요. 요컨대, 이전의 풍성하고 두터웠던 다차원적 결혼관 대신 결혼의 계약적 차원만을 강조하는 빈약하고 얇은 결혼관이 사람들의 인식과 법제도를 지배하게 된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이것은 결혼이라기보다 결혼을 패러디한 것에 불과합니다.

**HLS:** 미국 상황을 보면 결혼제도와 관련한 논의를 연방대법원으로 대표되는 사법부가 주도하고 있으며 헌법적 기본권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Witte:** 결혼을 개인의 자유나 프라이버시 혹은 자율(autonomy)의 가치에 근거한 헌법적 기본권 문제로 접근하면 결혼제도의 특정한 일면, 즉 계약적 측면에만 지나친 무게를 실어주게 되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결혼을 사적 계약으로 보는 관점은 늘 있었지만, 언제나 다른 측면들과 균형을 이루며 혼인법제도의 다차원성을 유지해 왔습니다. 계약 모델을 결혼 논의의 유일한 기초로 삼는 것은 궁극에는 자멸을 초래할 것입니다. 결혼제도가 사회의 안녕과 복지에도 직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결혼을 지원하고 권장하며 그 중요성을 교육시켜야 할 의무가 국가와 정부에 있음에도 미국의 주정부들은 그 역할을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법부가 연방정부 차원에서 헌법적 선언으로 결혼의 문제를 다루기보다, 개별 주에서 구체적으로 타당한 창의적 대안들을 숙고하며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민주적 정치과정을 통해서 주의회가 제정하는 법률의 형태로 결혼과 관련된 사안에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HLS:** 미국에서 결혼제도와 관련된 논의는 연방정부보다는 주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사법부의 헌법 해석보다는 입법부의 법률제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셨는데, 주정부가 결혼을 권장하고 이혼을 억제하기 위하여 어떤 법제적 시도를 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Witte:** 우선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언약결혼제도(covenant marriage)<sup>8)</sup>의 도입이고, 둘째는 혼인제도 관할권의 다변화입니다. 결혼과 이혼을 자율(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의 문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언약으로 이해함으로써 보다 두터운 역사적 결혼관에 근거한 혼인법제도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전면적인 시행보다는 계약결혼을 원치 아니하는 커플들에게 최소한 언약결혼을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또한, 현재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혼인제도의 관할권을 예컨대 교회나 종교공동체와 분담하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법적 승인기준과 절차를 규정된 뒤, 당사자들이 원한다면 세속의 혼인법이 아닌 소속공동체의 종교법이나 전통에 따라 결혼토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도는 인도와 남아공화국 등 여러 나라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립학교뿐 아니라 종교재단에서 설립한 사립학교도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혼인·가족·성의 문제에 보다 책임 있는 법제도를 적용하려는 시도의 일환일 수 있을 겁니다.

**HLS:** 이제 질문의 주제를 조금 바꾸어 보겠습니다. 앞서 질문에 답하시면서 “OO혁명”이란 용어를 사용하셨는데, 교수님의 학문세계에 있어서 “혁명”이라는 개념이 가지는 의미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Witte:** “혁명”은 저의 학문세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소재입니다. 아마 훌륭한 학자 두 분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먼저 저의 멘토이신 해롤드 버만 교수는, 로스쿨

7) 위티 교수와의 대담이 있던 지 얼마 후 미국 연방대법원은 동성혼을 헌법적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전국적으로 이를 합법화하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2015.6.26. Obergefell v. Hodges).  
8) 언약결혼은 대안적 혼인법제로서 계약(contract)모델에 근거하여 쉽게 결혼하고(easy in) 쉽게 이혼(easy out) 할 수 있는 현재의 혼인법제와는 달리, 결혼 전으로 당사자들이 결혼의 성격과 목적 및 책임에 관한 상담을 받도록 하며, 결혼은 평생 지속되는 관계임을 서약토록 하고, 특정한 근거를 증빙할 때만 이혼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제도이다. 1997년 루이지애나를 시작으로 현재는 알칸소와 애리조나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참여도는 저조한 편인데, 위티 교수에 의하면 행정업무의 증가를 기피하는 담당 공무원들의 미온적 반응과 결혼관할권을 완전히 되가져오려는 가톨릭교회의 반대가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스승이시며 감사하게도 에모리에서는 동료로 계셨던 분이시요. 20세기 법과 혁명이란 주제의 최고학자셨는데, 다트머스대학교 학부생 시절 오이겐 로젠스톡-후시(Eugen Rosenstock-Huessy) 교수<sup>9)</sup>로부터 역사적 흐름을 바꿔 놓은 혁명적 시기에 주목하는 역사관을 배운 뒤 법의 역사를 재구성하는데 이를 적용하셨습니다. 광범위한 법의 변혁을 초래한 주요 시기들을 12~13세기 교황혁명, 루터혁명, 17세기 영국혁명, 18세기 프랑스혁명과 미국혁명, 그리고 볼셰비키 러시아혁명으로 정리하셨는데, 그러한 연구결과물은 법사학의 수작인 『법과 혁명 1,2권』으로 출간되었고, 그 외 여러 논문에서도 자신의 이론을 변호하셨지요. 저는 또한 카이퍼주의를 옹호·확장시켰던 20세기 칼빈주의 법학자 헤르만 도예베르트의 영향도 받았습니다. 특히, 문명의 기저에는 근본동기 혹은 근본(법)이념이 있는데, 서양역사에서는 종교개혁, 교황혁명 및 프랑스혁명 등이 이러한 근본동기의 변화로 인한 문명교체의 변혁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학문 배경에는 이 두 분이 계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문명사의 거시적 변혁을 “혁명”으로 보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라 할지라도 영구적으로 인식론적 변화를 초래한 흐름의 굽이를 “혁명”으로 간주하고 그러한 변화의 결과에 더욱 관심을 가집니다. 고대와 성서시대로부터 현대에 이르는 2500~3000년간의 전통을 살펴보면 지속되는 사상과 제도 및 규범과 관습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흐름을 보면 곳곳에 방향이 바뀌는 굽이가 있다는 거지요. 영구적 변화를 초래한 변혁기 혹은 분수령 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혼인과 가족관계 및 성의 표현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와 가치관뿐 아니라 궁극에는 법제도의 근본적 변화를 초래한 60~80년대를 성의 혁명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법의 변화를 야기했지만 신학의 변화도 일어나는데, 교회가 성혁명의 결과를 수용하면서 신학이 현실을 뒤쫓아가는 형국



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변화에는 열려 있는 능력을 상실해 버리고 그저 ‘문화가 바뀌었으니까..’라며 문화에 대한 교회와 신학의 역할을 포기한 것 같은데, 이 점이 성혁명의 결과 중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HHS:** 그렇다면 성혁명의 결과에 대해 교회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질문을 좀 더 확장시키자면, 그리스도인과 문화의 관계 혹은 교회와 세상의 관계에 관한 교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Witte:** 여러분도 알다시피, 리차드 니버는 『그리스도와 문화』에서 교회가 세상과 관계하는 5가지 방식을 소개하였고, 종교사회학자들과 실천신학자들도 다양한 방식을 제시합니다. 결혼과 가족생활에 관해서도 돈 브라우닝(Don Browning) 공저 『From Culture Wars to Common Ground: Religion and the American Family Debate』(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7; second edition 2000)를 보면 여러 가지 전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진정성 있게 세상 속에서 부르신 삶(calling)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지혜를 구하면서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한

9) 오이겐 로젠스톡-후시(1888-1973)는 미국으로 이주한 유대계 독일인 사회(철)학자이다. 유년기에 개신교인이 되었으며 법학박사와 철학박사를 받은 후 대학에서 독일법사를 가르치던 중 나치의 등장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갔다. 하버드 대학교를 거쳐 다트머스 대학교에서 은퇴할 때까지 교수로 재직하면서 기독교신앙에 기초하여 역사와 언어에 관한 독창적 이론들을 남겼다. 다트머스로 옮긴 이유는 하버드 재직 시 그곳의 과학주의적 학문사조와 충돌하며 동료들의 반기독교적 성향을 비판하였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교회의 전통이며 이성과 경험에도 부합하는 결혼관·가족관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것이 문화에 저항함으로써 가능하다며 그리해야겠지요. 교회의 부르심을 잊어버리면 세상과 문화의 아류로 전락해 버리고 마니까요. 교회가 진정성 있게 부르신 삶을 산다는 것은 분리주의적 접근이나 현실 회피적 자세 이상을 요구합니다. 결혼과 가족이라는 근본적 제도에 관해서는 더욱 공적 논의에서 한 부분을 차지해야 합니다. 선의의 매개자요 개혁의 선지자요 현명한 공작원으로서 정치공동체에게 해악이 될 위험요인들을 완화시키는 역할은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논의에 참여하고 분명한 목소리를 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60~80년대의 세속화가설은 기독교와 여타의 신앙이 서서히 고사할 것이며 공공의 삶과 공적 심의과정에서 중요성을 잃게 될 것을 전제했었지요. 놀라운 사실은 그런 예상이 빚나갔다는 건데, 기독교와 종교는 사라지기를 거부했고 특히 지난 20년간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포괄적 교설(comprehensive doctrine)을 괄호로 묶고 특히나 종교적 신앙에 근거한 주장과 논의를 공적포럼에서 배제하려 했던 공적이성(public reason) 이론이 보다 현실적으로 타당한 인식론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신학 없이(detheologized) 표백된 공적이성을 주장했던 존 롤스나 위르겐 하버마스 같은 사람들도 학문 후기에는 의구심을 표하고 있지요. 이제 크리스천들도 다시 대화로 초대받고 있습니다. 공적 논의 사안들에 대해 능력과 세밀함으로 무장하여 대화의 장에 나아가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들의 색깔을 내지 못하고 단순한 주장들만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요. 중요한 사안에 대한 변증학적 준비가 부족한 모습도 종종 보게 됩니다. 타종교나 무종교뿐 아니라 반종교인들과도 대화할 수 있고 그들이 기독교 전통의 지혜를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불변하는 관점을 다른 언어로도 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나 자연법 이론이든 여타의 편의주의 논리이든, 우리의 신앙적 관점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무기를 동원하면서 (이집트 문자해석의 실마리가 되었던) 로제타석 같은 것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하겠습시다.

**HLS:** 방금 언급하신 소위 공적이성에 관해 질문을 드리려던 참이었는데 미리 아시고 답을 해 주셨네요. <월드뷰>를 읽으시는 많은 분들도 다원주의 시대이며 신앙에 적대적이라 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기독교학술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시리라 봅니다. 교수님은 기독교학자로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Witte:** 기독교학자와 비기독교학자에게 공통적으로 부여된 핵심 사명은 자신의 연구 분야에서 지혜의 청지기가 되어, 다음 세대에 전수되도록 보존하고 가르치며 자신이 속한 분야의 차세대 학자들을 잘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즉, 지식이라는 체인의 연결고리가 되는 일이라 하겠습니까. 기독교학자의 특권은 이러한 지식전통의 어느 부분이 성경의 가르침과 원리에서 비롯된 것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성경적 선례에 기반하여 진화하는 법제도의 전통을 주의 깊게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로 전수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독교학자로서 자신이 소속된 사회나 정치공동체와 어떻게 관계 맺을 것인가, 어떻게 공적 논의에 참여할 것인가는 보다 어려운 질문입니다. 연구결과물을 논문으로 발표하거나 교육하고 강연하면서도 행동가의 역할은 소송변호사나 로비스트 또는 법률제정자들과 같은 전문가집단에게 맡기는 입장을 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들이 하는 일을 수동적으로 지켜보는 것도 잘못된 접근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이게 제가 택한 방식이었습니다. 다른 접근방식을 택한 기독교법학자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소송에 가담하거나 정부기관을 압박하고 구체적인 법률제정에 참여하면서 중요하고 어려운 사안에 대해 관련분야의 지도자들과 접점을 만들고 아주 구체적으로 대화에 참여하는 힘든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신문투고와 TV 출연뿐 아니라 새로운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여 매일매일의 전투에 몸담는 것이지요. 어떠한 방식이든 기독교학자로서의 의무는 진정성 있게 복음의 증인된 삶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더 행동가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구체적 이슈에 너무 깊숙이 관여하여 학자로서의 냉철한 권위를 잃게 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분별한 저의 소명은 결혼과 가족, 성, 인권과 종교의 자유에 관한 현장의 일들을 감당할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의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HLS:** 며칠 전 저희 교수들과 환담하시면서 “지금까지는 내가 주로 다른 사람들이 과거에 무슨 말을 했었는지에 연구초점을 맞추었다면 이제부터는 학자로서의 역할을 좀 더 확장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의미인지요?

**Witte:** 제가 분별하려고 애쓰는 부분입니다. 신앙과 자유와 가족, 법과 정치와 사회에 관한 역사적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특권을 주셨다면 그 지혜를 정제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규범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기독교 신앙의 안팎에 있는 자들이 더욱 분명하게 학문의 유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노력을 겸손하게 감당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인식에서 비롯되었지요. 지난 200여 년간 신앙인들은 변화하는 문화적 환경 속에서 성경의 자리와 역할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왔습니다. 이러한 전통의 가르침을 간파하고 자신의 규범적 견해만을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교만일 겁니다. 따라서 지난 3여 년간 사학자로서 저의 역할은 전통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찾아내고(retrieve) 재구성(reconstruct)하여 그릇된 변화에 대한 신앙인인 우리의 논의가 두터워지게 함으로써 세상과 다시 접전(reengage)하며 바라건대 문화를 개혁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속한 처방과 간명한 답을 추구하는 우리 시대의 특성상 연구결과물을 세상에 내어놓고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은 아무도 입지 말라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더욱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투고도 몇 차례 하고 이전보다 규범적 성격이 강화된 논문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쓰는 책들의 마지막에 덧붙이는 결론적 사색 부분이 갈수록 길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방향으로 더 나가라는 부르심인지 분별해야겠지요. 가끔씩 기독교 법철학(Christian jurisprudence)의 체계적 저술에 관심도 가져봅니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이나 칼빈의 『기독교강요』, 바르트의 『교회교의학』 혹은 롤스의 『사회정의론』같은 책이라고 할까요.



**HLS:** 끝으로, 오늘 대담에서 다룬 주제와 관련된 타인의 저서 중 교수님께서 각별히 평가하시는 세 권을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Witte:** 세 권만 추천하라니 어렵군요. (웃음) 니콜라스 월터스토프(Nicholas Wolterstorff)의 저서인 『Justice: Rights and Wrongs』(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0)는 심오한 기독교적 비전으로 권리담론을 정의의 틀 안에서 근본적으로 재고찰한 수작입니다. 제레미 월드론(Jeremy Waldron)의 『God, Locke, and Equality: Christian Foundations on Locke's Political Thought』(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도 중요한 저서입니다. 로크 정치사상의 기독교적 연원을 다루었던 학자들이 있지만, 이 책만큼 설득력 있는 작업을 하지는 못했지요. 로크는 영국 청교도적 배경에서 출발하여 이를 깊이 있게 반영하면서 종교적·신학적으로 자신의 사상체계를 수립하였으나, 계몽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그의 사상을 점점 세속화된 형태로 받아들이는 주장을 훌륭하게 제시하고 있는 책입니다. 결혼/가족에 관한 저서로는 돈 브라우닝(Don Browning)의 『Marriage and Modernization: How Globalization Threatens Marriage and What to Do about It』(Wm. B. Eerdmans Pub, 2003)을 추천합니다. 탁월한 사회과학자의 안목으로 결혼과 가족이라는 근본적 제도에 근대화와 세계화가 끼친 영향을 풀어내면서, 모든 문화권에서 고려할 가치가 있는 풍성하고 진정한 기독교 사상의 그림을 화폭에 담고 있습니다.

**HLS:** 27권이나 되는 교수님의 저서가 국내 독자들에게 상세히 소개될 바랍니다. 장시간 대담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존 위티의 좌담영상  
바로가기